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 3 판

(2021.9.24.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요 개정사항]

구분		기존(제2-1판)	조정(제3판)
확진자 밀접접촉	격리 감시체계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 (보건소 확인 시 검사신고 등 안내)	좌동
	▶면제조건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 완료자였을 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 ④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⑤ 접촉한 확진자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 <추가>	① 유지 ② 유지 <삭제> <삭제> <삭제> ③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 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고위험집단 시설 이외에서 확진자 발생 시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전파 및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격리가 가능
	진단검사	(1회) <추가> ① 최종접촉일 기준 6~7일* *단, 접촉자 분류일이 6~7일 이후인 경우 또는 선행확진자 특정 불가 시 즉시 검사 가능하며,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	(2회) ① 접촉자 분류 직후 ② 최종접촉일 기준 6~7일 ※단,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방역관(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 (격리해제전 검사 등) *고위험집단시설의 경우 격리해제전 검사 필수
해외입국	격리 감시체계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 (보건소 확인 시 검사신고 등 안내)	좌동
	▶면제조건	①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 베타형·감마형·델타형변이 등 유행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① 좌동 ② 좌동 ③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격리면제 요건 모두 충족시)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경우 격리면제 및 수동감시 적용

* 관련공문: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4406(2021.9.17.), 「국내 예방접종완료 입국자 관련 조치 안내」

[일러두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변경될 경우 이 지침의 내용도 함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지침을 적용하거나,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침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국내 현황(2021.9월 현재)]

- '21.2.26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 실시

[우리나라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제조사	아스트라 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플랫폼	바이러스벡터 백신		mRNA 백신	
접종횟수	2회	1회	2회	2회
접종간격	8주~12주 (허가 4주~12주)	-	21일	4주
국내허가제 품명 (허가일)	한국 아스트라 제네카 코비드-19 백신주 ('21.2.10.)	코비드-19 백신얀센주 ('21.4.7.)	코미나티주 ('21.3.5.)	모더나 코비드-19 백신주 ('21.5.21.)

1 기본원칙 및 다른 지침과의 관계

- 예방접종완료자 및 예방접종미완료자도 여전히 대응지침 등 기존 지침의 규제대상이 되며, 생활방역지침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해서만 기존 지침 및 수칙 등에 대한 예외나 특례를 인정
- 다만 다른 지침 및 수칙 등에서 예방접종자 및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 이 지침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 및 수칙 등을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예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의 감염병의심자로 보아 기존 지침 등을 적용

2 정의

- 이 지침에서 “예방접종완료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방접종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예) 예방접종완료일: 5.1일, 2주째: 5.15일, 지침 적용일: 5.16일 0시부터

-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함

-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경우 향후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면,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 협약 작성이나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사전협의 필요

3 확진자 밀접접촉 관련 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3-1. 원칙

- 예방접종완료자도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접촉자와 동일하게 역학조사 및 그에 따른 PCR검사 등 조치 실시
- 일정 요건(3-2)을 충족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실시 가능. 따라서, 일정 요건(3-2) 미충족 시 자가격리를 시행하며, 요건을 충족하여 수동감시로 전환한 이후라도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실시한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 전환

3-2. 수동감시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수동감시 실시

-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예) 예방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최초 접촉일이 9.16일 이후이면 자가격리 면제 적용 가능
 -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 ③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 ※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고위험집단시설 이외에서 확진자 발생 시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전파 및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격리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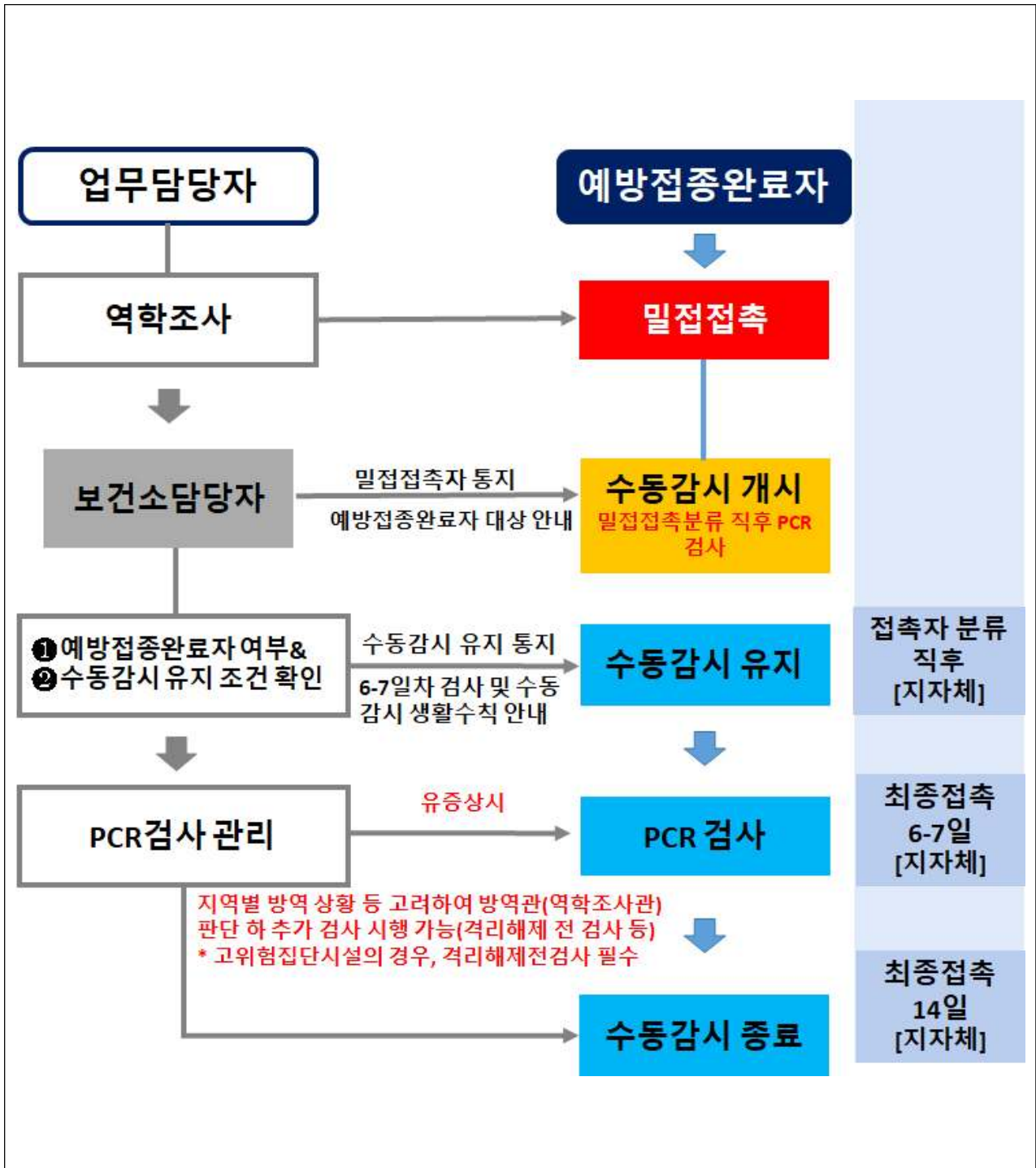
- 수동감시 실시 중에는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을 준수(붙임 2)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3-3. 검사 및 수동감시 해제

- ① 접촉자 분류 직후 및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 실시*
 -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 * 단,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방역관(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 (격리해제 전 검사 등)
 - * 고위험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의 경우 격리해제 전 검사 필수
- ②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 ☞ ①, ② 둘 중 하나라도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신속하게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후,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시행
- 위 관련 각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 해제

〈확진자 밀접접촉 관련 업무 처리 개요〉



4 해외입국 관련 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4-1. 원칙

-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기존 검역지침 등에 따라 통상의 입국자와 동일하게 PCR검사 등 조치 실시
- 일정 요건(4-2)을 충족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실시 가능. 따라서, 일정 요건(4-2) 미충족 시 자가격리를 시행하며, 요건을 충족하여 수동감시로 전환한 이후라도 입국 6~7일차에 실시한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 전환

4-2. 수동감시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수동감시 실시

①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예) 예방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입국일이 9.16일 이후이면 자가격리 면제 적용 가능

② 무증상일 것

③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격리면제 요건 모두 충족시)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경우 격리면제 및 수동감시 적용

* 해당 국가는 주기적으로 별도 통지

: 공문(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내 공지사항·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국가)(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입국일 당일 기준으로 해당 유행국가가 아닌 경우에만 수동감시 전환

- 수동감시 실시 중에는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을 준수(붙임 2)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4-3. 검사 및 수동감시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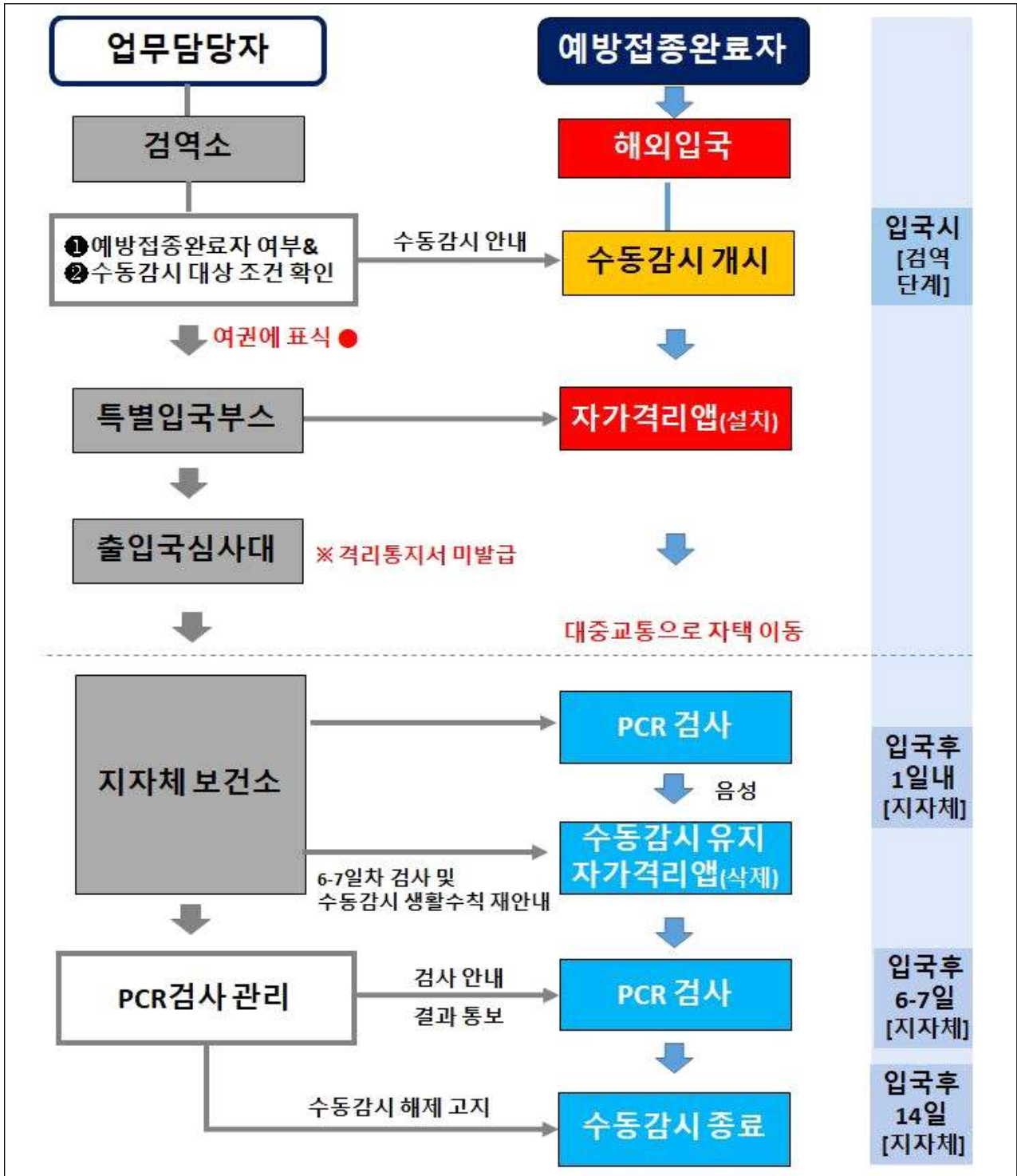
① 입국일로부터 1일차 및 6~7일차에 PCR검사 실시*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②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 ☞ ①, ② 둘 중 하나라도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신속하게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후,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시행
- 위 관련 각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

〈해외입국 관련 업무 처리 개요〉



5 방역수칙 적용 관련

-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방역수칙은 예방접종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된 지침이나 수칙을 따름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지침팀 등)
- ☞ 예방접종완료자라도 증상발생 시 즉시 검사 권고

6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 예방접종완료자는 감염취약시설,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
 - 단, 감염취약시설 등의 선제적 검사 관련 사항은 예방접종의 진행 상황,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문으로 지속적 관리(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 ☞ 예방접종완료자라도 증상발생 시 즉시 검사 권고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밀접접촉자용)

귀하께서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이나,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실거주지 보건소의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를 제시).

I 수동감시 관리 절차

- ① (밀접접촉 확인 시)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력 알리기,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② (PCR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 ③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수동감시 조건▶ 충족 시) 수동감시 실시
 - ※ (예방접종미완료자 또는 수동감시 조건 미충족) 자가격리 전환
- ④ (수동감시 기간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 시행
 -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 단,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방역관(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격리해제 전 검사 등)

접촉일로부터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

 - *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 ⑤ (수동감시 종료)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 해제

II 수동감시 대상 조건▶

-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예방접종완료자]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예) 예방접종완료일: 9.1일, 2주째: 9.15일, 지침 적용일: 9.16일 0시부터

-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 ③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 ※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고위험집단시설 이외에서 확진자 발생 시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전파 및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격리가 가능

* 밀접접촉자 통지시 함께 통지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해외입국자용)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대상 조건▶ 충족 시 격리를 면제하고, 수동감시를 받게 되며, 입국 이후 1일차와 6~7일차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가 유지됩니다. 입국자는 **검역소 및 실거주지 보건소에 예방접종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를 제시)

♣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시까지의 자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입국시 설치한 자가격리앱은 '음성' 확인 시 삭제하시면 됩니다 ♣

I 수동감시 관리 절차

[검역단계]

- ①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 또는 접종스티커) 제시, **자가격리앱 설치** 및 실거주지로 이동
 - * 자가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가능한 자차 이용)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 * 유증상자는 검역소에서 PCR 검사 실시, 음성인 경우 실거주지로 이동

[지자체단계]

- ② (PCR검사)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검사 실시(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 ③ (수동감시 실시)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수동감시 실시(자가격리앱 삭제)
- ④ (수동감시 기간 중) **입국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 시행(관할보건소)
 - * 검사를 받지 않거나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되며, 확진자는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입국일로부터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
- ⑤ (수동감시 종료)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 해제

II 수동감시 대상 조건▶

- ①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 예시)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입국일이 9.16일 0시 이후이면 격리면제 가능

[예방접종완료자]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예) 예방접종완료일: 9.1일, 2주째: 9.15일, 지침 적용일: 9.16일 0시부터

※ 국내 1회+국외 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하며, 조건 충족시 격리면제 가능

-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 ③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입국일 당일 기준으로 해당 유행국가가 아닌 경우에만 수동감시 전환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모두 충족시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경우 격리면제 및 수동감시 적용

* 해외입국시 기타 안내와 함께 통지

붙임 2 |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밀접접촉자용)

- ◆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에 같음하여 수동감시 대상이 되신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제공됩니다.
- ◆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아울러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됩니다.

[자가 모니터링]

- 수동감시 기간 중에는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업무담당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려주시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 때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하여야 합니다.
 -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자차, 도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기타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합니다.
 - 수동감시 기간 중 출·퇴근, 등·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은 자제하고, 가정 내 머무르도록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십시오.
 -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 거리를 유지합니다.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여 주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수동감시 중 검사]

- ① 접촉자 분류 직후, 6~7일차에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수동감시가 유지됩니다.
 -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② 수동감시 중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PCR검사를 받습니다.
- ☞ ①, ② 둘 중 하나라도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귀하의 검사일은 _____년 ____월 ____일~____월 ____일,

수동감시 기간은 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입니다.

담당보건소: _____ 담당자: _____ 긴급연락처: _____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해외입국자용)

- ◆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에** 같음하여 수동감시 대상이 되신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제공됩니다.
- ◆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아울러 입국 후 1일차 및 6~7일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됩니다.

[자가 모니터링]

- 수동감시 기간 중에는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업무담당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려주시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 때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하여야 합니다.
-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자차, 도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기타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합니다.
 - 수동감시 기간 중 출·퇴근, 등·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은 자제하고, 가정 내 머무르도록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십시오.
 -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 거리를 유지합니다.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여 주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수동감시 중 검사]

- ① **입국일로부터 1일차 및 6~7일차에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수동감시가 유지됩니다.
 -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② 수동감시 중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PCR검사를 받습니다.
- ☞ ①, ② 둘 중 하나라도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귀하의 검사일은 _____년 ____월 ____일~____월 ____일,

수동감시 기간은 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입니다.

담당보건소: _____ 담당자: _____ 긴급연락처: _____

붙임 3

업무담당자의 수동감시 실시 요령

□ 확진자 밀접접촉 사례

가. 밀접접촉 확인 시 업무 처리 사항(통상적인 밀접 접촉사례와 동일하게 진행)

통상절차 진행	① 밀접접촉자 통지시에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밀접접촉 자용)'도 함께 통지 ② (질병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등
------------	---

나. 지자체 업무담당자 처리 사항

* 밀접접촉자가 예방접종완료자인 것을 확인한 경우

예방접종 완료 확인 후	①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확인 -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접종완료일 확인) ②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 ♣ ②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③ 수동감시 대상자 여부 확인(본문 "3-2" 요건 확인) -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고위험집단시설 이외 에서 확진자 발생 시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전파 및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격리가 가능
	④ 수동감시자 대상 생활수칙 교부(①, ② 요건 충족시 문자, 이메일 가능) * 최종접촉일 기준 6~7일차 검사 안내 포함
수동감시 기간 중	① 6~7일차 PCR검사 사전 고지, 검사 실시, 결과 확인 및 통지 * 자가격리 대상자이지만 검사를 전제로 수동감시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 통지서 발부(검사 완료 후 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격리 기간 설정) * 단,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방역관(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 (격리해제 전 검사* 등) ②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 '①, ②' 결과 모두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유지 ③ 수동감시 해제 고지: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 소급적용

- 개정 이전 지침에 따라 조치 중인 자에 대해서는 본문 "3-2" 요건을 기준으로 격리
실시 및 해제(수동감시 전환) 등 여부를 판단 및 시행할 수 있음

□ 해외입국 사례

가. [검역단계] 해외입국 시 업무 처리 사항(통상적인 입국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입국시	<p>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자가 제시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 또는 접종스티커) -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확인(예방접종 후 2주 경과) <p>② 수동감시 대상자 여부 확인(본문 "4-2" 요건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증상 여부 확인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입국일 당일 기준으로 해당 유행국가가 아닌 경우에만 수동감시 전환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격리면제 요건 모두 충족시)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경우 격리면제 및 수동감시 적용 <p>③ 상기조건을 충족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확인된 경우 여권에 스티커 부착,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해외입국자용)' 배부</p>
무증상자	<p>① 자가격리앱 설치(특별입국부스), 실거주지 이동 안내</p> <p>②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최초 검사(입국 1일차) 실시 안내</p>
유증상자	<p>① 검역소에서 검사 실시</p> <p>②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앱 설치 및 실거주지로 이동 안내</p>

나. [지자체단계] 업무담당자 처리 사항

입국후 1일내	<p>① (질병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입국자 명단 확인 및 유선 연락</p> <p>♣ 해외입국자가 "예방접종완료자"임을 알려올 경우</p> <p>②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접종완료일 확인) <p>③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p> <p>♣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p> <p>④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통지* 또는 교부 (②, ③ 요건 충족시 문자, 이메일 가능) * 입국일 기준 6~7일차 검사 안내 포함</p> <p>⑤ 자가격리앱 삭제</p>
수동감시 기간 중	<p>① 6~7일차 PCR검사 사전 고지, 검사 실시, 결과 확인 및 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자로 전환하며, 자가격리 통지서 발부 <p>②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p> <p>☞ '①, ②' 결과 모두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유지</p> <p>③ 수동감시 해제 고지: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p>

※ 소급적용

- 개정 이전 지침에 따라 조치 중인 자에 대해서는 본문 "4-2" 요건을 기준으로 격리 실시 및 해제(수동감시 전환) 등 여부를 판단 및 시행할 수 있음

붙임 4 예방접종이력 확인 방법

- 예방접종자(1·2차)는 확진자 밀접접촉에 따른 역학조사 시, 해외에서 입국 시 검역소 업무담당자 및 자택으로 이동 후 실거주지 보건소와 연락시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전자증명서(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를 제시(제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
 - 이 외에도 감염취약시설 등 선제검사 시, 기타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필요 시 시설 관리자 등에게 제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

1. 전자증명서(COOV):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인

1-1. (예방접종자)
어플리케이션
(COOV)으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발급: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 스토어(iOS)에서 'COOV' 검색-설치



1-2. (확인자)
어플리케이션
(COOV)에서
QR코드 스캔하여
검증



2. 종이증명서를 통한 확인


* 발급

-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 방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nip.kdca.go.kr), 정부24 (www.gov.kr) 접속하여 출력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7.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9. 11.>

제 호
No.

예방접종증명서 Certificate of Immunization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Month/Day/Year)	
		성별 Sex	
주소 Address			
접종명 Vaccine	접종차수 Vaccination Series	접종일 Date Given(Month/Day/Year)	접종기관 Provider/Clinic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all the above vaccinations were performed under Article 27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bove-mentioned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y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의료기관장 **직인**
 Seal

Governor of ()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 Si/Gun/Gu, The head of () medical institution

210ex×297mm(복합지 80g/㎡(저활용종))

3. 예방접종스티커

- * 발급: 주민센터 주민등록증 라벨 스티커 출력시스템을 통해 접종증빙정보가 담긴 스티커 출력→ 신분증에 부착(7.1~)

<신분증 뒷면에 부착된 스티커 시안>

1차접종 21.00.00	제0000000000000000호 홍길동 질병관리청
접종완료 21.00.00	제0000000000000000호 홍길동 질병관리청

붙임 5 자주 묻는 질문

Q1. 예방접종완료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로 규정하는데, 2주 경과일은 언제가 되는지?

- 2차 예방접종완료일: 9.1일, 2주째: 9.15일, 지침 적용일: 9.16일 0시부터
- * 예시)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 2차 접종일이 9.1일이라면, ^(해외입국자)입국일/^(밀접접촉자)최초 접촉일이 9.16일 0시 이후 인 경우 격리면제 적용 가능

Q2-1. 1차 접종자인 경우에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Q2-2.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했습니다.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 경과 전에 출국 하는 경우에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A2-1)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니므로 본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님. 예방접종미완료자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평균 2주 소요된다는 점에 기반한 것으로, 항체 형성 이전 확진자 밀접접촉 시 감염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
- (A2-2)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라면 지침 적용 가능
- * 예시)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 2차 접종일이 9.1일이라면, 입국일이 9.16일 0시 이후 인 경우 격리면제 적용 가능

Q3.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된 경우, 자가격리면제 및 수동감시 유지 조건으로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밀접접촉 시점과 수동감시 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최초접촉일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인 상태를 의미하며,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간 수동감시

Q4. 예방접종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완료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COOV) 설치* 또는 종이로 된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주민센터에서 출력한 스티커***를 통해 예방접종 증명 가능
-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 스토어(iOS)에서 'COOV' 검색-설치 전자출입명부 방식과 동일하게 QR로 간편 인증 가능(4.14~)
- **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 방문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 정부24(www.gov.kr) 접속하여 출력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7.1~)

*** 주민센터 주민등록증 라벨 스티커 출력시스템을 통해 접종증빙정보가 담긴 스티커 출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중 택 1)에 부착(7.1~)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예방접종이력 확인 등 관련 추가 문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1339, 043-719-8372, 8375

Q5. 국내예방접종완료자인데

- ① 해외입국 시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 할 때
 - ②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및 6~7일차 검사를 위해 관할 보건소에 갈 때 /해외입국자가 입국 1일차 검사 및 6~7일차 검사를 위해 관할 보건소에 갈 때
 - ③ 확진자 밀접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가 수동감시 중 증상발생으로 관할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갈 때
-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나요?

- (①)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마스크 착용, **가능한 자차 이용,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 (②)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가능한 자차를 이용, 반드시 마스크 착용
 - (③)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업무담당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리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 이 때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해야 하며,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또는 보건소로 이동 시 자차, 도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 ☞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해야하며, 확진자 관련 조치 시행

Q6.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입니다. 본 지침(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의 적용을 받아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에 대해 적용. 다만,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경우 향후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면,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
- ☞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인정 합의 국가 등 관련 문의: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 1339, 043-719-9212, 9215, 9206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관련 사항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 (☎ 044-202-1806)의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043-719-9212, 9215, 92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검역대응 지침'을 참조**

Q7-1. 접종국가가 서로 다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국내 1회, 국외 1회)도 본 지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Q7-2. 주한미군부대·대한민국 주재 외국대사관 한국국적 접종완료자입니다. 본 지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A7-1) 국내 접종력이 1회 이상인 경우 국내 예방접종증명서에 1차·2차 모두 포함하여 발급되므로, 현행 지침 적용 가능
- (A7-2) 국내 예방접종증명서에 1차·2차 모두 포함하여 발급되면 현행 지침 적용 가능

Q8-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기내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한가요?

Q8-2.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한 이후 지역사회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한가요?

- (공통) '해외입국자의 수동감시 대상 조건'과 '확진자 밀접접촉의 수동감시 대상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자가격리 면제 가능

Q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중 자가격리가 면제되어 수동감시 중인 자는 수동감시 기간에 해외 출국이 가능한가요?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출국 사실을 알린 후 출국 가능. 단, 수동감시 기간 동안 수동감시 생활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 본인 건강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하며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는 검사를 받아야 함

[지침 관련 실무 연락처]

구분	업무	부서	연락처
지침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적용 기준, FAQ 등 	질병관리청 감염병전문콜센터	1339
해외입국자 전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PCR 검사 등 검역 관련 사항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043) 719-9212, 9215, 92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인정 합의 국가 등 관련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질병관리청 국제협력담당관	02) 2100-8189 044) 202-1805 043) 719-9212, 9215, 9206 043) 719-77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등 격리면제제도 전반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	044) 202-18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한미군 등 	질병관리청 국제협력담당관	043) 719-7754, 7751
밀접접촉자 전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련 밀접접촉자 분류 및 관리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043) 719-7977
선제적 검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취약시설 등의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043) 719-7262
예방접종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 접종력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	043) 719-8372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요양병원 면회기준 (요양병원 백신접종 완료자 접촉면회 기준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양병원 시설대응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 202-2464, 35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접종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의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관련 	질병관리청 감염병전문콜센터	13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질병관리청 감염병전문콜센터	13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지침 해석 등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지침팀	043) 719-9328